

10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① 이 규정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본 규정은 본교와 외국대학간의 소정협약에 의한 학생의 교류를 위하여 학점을 상호인정하고 소정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2조(정의) “교육과정의 공동운영”이라함은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설치 운영하는 교과를 외국대학과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공동운영 약정)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의 약정에 의한다.

제4조(자격) ① 본 대학교 학생에게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본교와 협약된 외국의 대학에서 수학하는 유학을 허가 할 수 있다.

② 위의 허가는 파견 시점이 2학년 재학 중이며 4학기 이상 수료한 자(파견대학의 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에게 주어질 수 있다. 단,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③ 학기당 평균 17학점 이상 이수하고, 총 성적 평점평균이 B학점 이상이며 1, 2학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.

④ 외국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 소유자로서 학과장 및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.

제5조(신청) 단기해외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기간에 단기 해외유학신청서(소정양식)를 보호자 연서로 소속 학과장 및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거쳐 국제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선발) 대학은 지원자에게 어학시험 및 면접을 실시하며 그 성적과 본 대학교 재학생적을 기준으로 유학허가 학생을 선발한다.

제7조(경비) ① 유학기간동안의 매학기 소정 등록금은 대학 간 협약에 의한다.

② 유학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수속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. 경비부담에 관한 보증인 서약서(소정양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승인) 유학의 최종승인은 총장이 한다.

제9조(과목이수) 유학한 대학에서의 과목이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① 매학기 6~20학점을 수강신청하고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.

② 본 대학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의 학점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.

③ 본인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외국대학에서 타 전공을 이수할 경우 본 대학에서의 부전공과목의 이수를 권장한다. 다만 전공 및 부전공이 아닌 과목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 상에 있는 유사과목에 한하여 이를 전공 및 일반선택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.

④ 유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대체과목 이수계획서를 작성하고 학과장 및 교

무처장의 승인을 받는다.

제10조(학점인정) ① 해외유학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증명서는 해당 대학에서 직접 본 대학교로 우송된 것으로서 소속 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교무처에 제출하고 교무처는 이를 검토하여 학점을 인정한다.

② 해외유학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본 대학교 학업성적표에 해외 유학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임을 표기하고 총 성적 평점누계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성적환산을 하지 않는다.

③ 본 대학과 교류중인 해외대학에서 유학 할 경우 해외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을 학점화 할 수 있다. 학생은 유학 이전에 이 사실을 학교에 통보하여야 하며, 국제교육원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④ 파견대학에 본인 전공과목 및 유사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수강한 과목은 전공교수의 동의하에 전공과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.

제11조(신고) 해외유학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하여 본 대학교 국제교육원에 귀국보고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(학칙준용) 본 규정에 없는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과 유학대학 학칙 및 학사내규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